

업무보고사항

□ 제4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

- 제4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- '96. 9. 10

< 공고내용 >

- 집회일시 : '96. 9. 16 (월) 오후 2시
- 장소 : 화순군의회 본회의장

□ 제46회 임시회시 의결된 안건 처리상황

-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- '96. 8. 14 화순군조례 1427호로 공포
- '96년도 제2회 세입·세출 추가경정 예산안
- '96. 7. 30 화순군고시 제 1996-26호로 고시

□ 각종의안 발의 및 제출상황

- 제4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- '96. 9. 9

- 발의자 : 양동복 의원 외 2인
- 회기 : '96. 9. 16 ~ 9, 21 (6일간)

-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- '96. 9. 9

- 발의자 : 홍중희 의원 외 2인
- 출석요구내용

일시	대상	사유
'96. 9. 19 (목) 10 : 00	군수, 부군수, 실과소장 및 읍면장 전원	군정질문에 대한 답변
'96. 9. 20 (금) 10 : 00	군수, 부군수, 실과소장 전원	군정질문에 대한 답변
'96. 9. 21 (토) 10 : 00	군수, 부군수, 경영정책실장 문화공보실장, 재무과장, 사회복지과장, 환경보호과장 도시과장, 산업과장	화순군장학기금조성 및 관리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제정 및 개정조례안과 '9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심의처리에 따른 질의 답변

○ 건설공사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- '96. 9

○ 화순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 - 군수제출 ('96. 9. 4)

· 제안이유

공영개발사업의 효율적인 회계

관리와 합리적 운용을 위함.

· 주요내용

- 목적 (조례안 제1조)

공영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화순군 공영
개발사업 특별회계(이하 "특별회계"라 한다)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
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- 세입 (조례안 제2조)

세입은 선수금, 지방채, 전입금, 부담금, 보조금, 토지분양대금, 환지
청산금, 부지임대료 및 기타수입

- 세출 (조례안 제3조)

세출은 공영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와 채무상환, 전출금, 기타
경비

- 회계간 전용 (조례안 제4조)

· 사업기간중 세입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
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입 또는 일시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으며 전출입
또는 일시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년도 수입으로 변제

· 개발이익금은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타회계 전용

※ 9월 4일 총무위원회 회부

○ 화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- 군수제출 ('96. 9. 4)

· 제안이유

우리군에 소재한 간이상수도에 대하여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등에
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- 주요 내용

- 유지보수 (안제9조)

관리자인 군수가 주체가 되어 시행하나 경미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해결한다.

- 요금징수 (안제11조)

관리자는 사용자에게 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읍면장 및 협의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고 당해 지역의 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.

- 사용자 대표협의회 (안제13조)

관리자는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설 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※ 9월 6일 총무위원회 회부

-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- 군수제출 ('96. 9. 4)

- 제안이유

법률 제5126호 기부금품모집규제법과 화순군 조례 제1396호로 개정된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 및 화순군규칙 제825호 화순군직제규칙개정규칙에 부합되도록 하고 장학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장학금 지급에 있어 객관적인 형평성을 위치하기 위함.

- 주요 내용

- 장학적립기금은 군 출연금으로 조성

기부금품모집규제법 (법률 제5126호)에 의거 기탁금, 기타수입금을 장학 적립기금으로 조성할 수 없어 출연금만으로 장학적립기금을 조성코자 함.

- 장학진흥위원회 당연직위원 변경

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 및 화순군직제규칙개정규칙에 의거 경영정책실장이 당연직위원으로 임명되고 새마을과장은 직제가 폐지되어 삭제하고 경찰서 보안과장을 경찰서 방범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함.

- 간사의 변경

사무의 이관으로 내무과 서무계장을 경영정책실 정책개발계장으로 변경하고자 함.

- 장학생의 자격규정

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은 100분의 5이내 성적우수자로 하고 특수전문학교 학생은 100분의 50이내로 하며 대학생은 평균성적이 B학점 이상으로 자격을 규정함.

- 수석 합격자 격려금 지급

4년제 이상의 각 대학 입학시험 전체 및 단과대 수석 합격자에게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- 장학생 선발

관내 고교별 재적인원을 기준으로 형평을 유지도록 규정함.

- 장학금 지급방법 규정

장학금은 매반기 개시후 1월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함.

- 기금운용의 규정

장학금 및 수석합격자 격려금, 기능, 예체능분야, 도단위대회이상 입상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 마련

- 기금관리 공무원 지정

장학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금운용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하여 기금관리

- 장학기금 조성계획 변경

'97년 이후 군 출연금은 "250,000천원"에서 "350,000천원"으로 변경

※ 9월 6일 총무위원회 회부

- 화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- 군수제출

('96. 8. 14)

- 제안이유

민자유치사업업무가 "기획실"에서 신설된 "경영정책실"로 이관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조례내용의 일부를 개정코자

- 주요골자

- 부위원장은 "기획실장"에서 "경영정책실장"으로 변경

- 간사를 "예산계장"에서 "경영수익계장"으로 변경

※ 8월 19일 총무위원회 회부

○ 화순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- 군수제출 ('96. 9. 2)

· 제안이유

화순읍의 택지개발과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지역여건 변화와 인구증가로 불합리하게 획정된 행정리를 합리적으로 조정코자

· 주요골자

화순읍 교리 → 교리 1, 2구로 분구

" 만연리 → 만연 3구 신설

" 일심리 → 일심 4구 신설

" 광덕 1구 → 광덕 1, 4구로 분구

청풍면 백운 1, 2구 → 백운리로 통합

※ 9월 4일 총무위원회 회부

○ 화순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조례안 - 군수제출 ('96. 9. 2)

· 제안이유

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위임된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키 위함.

· 주요내용

- 목적 (제1조)

준농림지역 안에서의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설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- 행위 허가제한 대상지역 (안 제4조 1항)

- 학교 정화구역 안에서 교육에 영향을 주는 지역

- 지역주민의 정서함양 및 생활환경에 영향이 있는 지역

- 지역발전 및 장래의 지역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

-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

- 기타 명승사적지, 유원지, 자연경관, 환경보전, 관광자원보전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

- 행위제한지역 지정 또는 해제 : 군 조정위원회를 거쳐 군의회 동의를 득한 후
지정 또는 해제

- 행위제한지역 고시 (안 제4조 3, 4항)

조례제정후 행위제한 지역은 해당부서에서 기초조사실시 후 별도 지정고시

- 행위제한 내용 (안 제4조 2항)

- 행위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안에서 다음의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

-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(법 제21조 제1항 제3호)

-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 (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)

-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(제3조 제1항 제2호)

- 제한의 특례 (안제5조)

관광진흥 및 공익상 당해사업의 시행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안에 허용구역을 고시

※ 9월 4일 산업·건설위원회 회부

- 화순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- 군수제출 ('96. 9. 4)

- 제안이유

공영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영개발 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- 주요골자

- 세입 (안 제2조)

특별회계의 세입은 선수금, 지방채, 전입금, 부담금, 보조금, 토지분양 대금, 환지청산금, 부지임대료 및 기타수입으로 함

- 세출 (안 제3조)

공영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와 채무상환, 전출금, 기타 경비로 함

- 회계간 전용 (안 제4조)

-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또는 일시 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으며

- 특별회계의 개발 이익금은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타 회계 전용가능

※ 9월 6일 산업·건설위원회 회부

○ 화순군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중개정조례안 - 군수제출

(’96. 9. 2)

- 제안이유 - 휴양림내 추가시설물 시설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키 위함
- 주요골자
 - 텐 트 : 6인용 (1일) - 개인 20,000원
 - 산 막 : 8 - 12인용 - 개인 60,000원 ~ 100,000원
 - 숲속정자 : 8 - 10인용 - 개인 10,000원 ~ 15,000원
 - 캠프파이어장 (1회) : 1개소 - 개인 20,000원

※ 9월 6일 산업·건설위원회 회부

○ ’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- 군수제출 (’96. 9. 2)

(주요내용)

- 취득토지

소재지	지목	면적	소요예산(천원)	비고
화순읍 훈리 29-1	대지	1,084m ²	200,000	

- 취득건물

소재지	지목	건축면적	사업비(천원)			비고
			계	국비	군비	
화순읍 훈리 29-1	대지	1층 (100평)	250,000	125,000	125,000	

- 취득사유 - 문화예술공간 확보

※ 9월 4일 총무위원회 회부

□ 의회 접수민원 처리사항

○ 화약창고 설치반대 진정의 건

- '96. 8. 19 전남경찰청, 군수, 화순경찰서장에게 이송
- 진정인 : 이양면 목곡리 진병태 외 56명
- 이유
 - 이양면 옥리 산 골짜기에 화약창고 입주시 주변지가 하락 및 인근 주민 불안
 - 쌍봉사, 쌍치사 진입도로 확포장시 관광객의 출입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 되어지는데 이를 이용한 식당이나 모텔 등 위락시설 유치가 어려워짐.

※ 전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방범 63270 - 1889 ('96. 8. 27) 호로

화약창고 설치 민원도 불허하였음이 통보됨

○ 대중음식점 신축을 위한 산림훼손 허가반대 진정의 건

- '96. 8. 19 군수에게 이송

- 진정인 : 능주면 원지리 주민일동 (69명)
- 이유
 - 이곳은 천혜의 풍치임이고, 각종 조류의 서식지로서 보존의 가치가 있고
 - 식당이 들어서므로써 주변에 미치는 영향 즉, 식당에서 배출되는 오폐수와 산사태 위험, 그리고 지하수 고갈 등을 고려할 때 산림훼손 허가는 불허되어야 함.

○ 한천 영외지역을 남면에 편입요망 건의서 처리의 건

- 진정인 : 한천면 반곡리 이종대 외 257명
- 이유
 - 지역 : 험난한 큰 태령의 둑재로 인한 불합리
 - 교통 : 한천면 평리에서 남면과는 3km 떨어져 있으나, 한천면까지는 12km 떨어져 있고, 영외에서 면소재지간 군내버스는 운행이 중단되었으나 남면과는 매일 8회 운행
 - 학교 : 사평초등학교 반곡분교 졸업후 사평중학교 입학으로 남면 면민과는 교육정이 돈독함.

- 시장 : 일상 생필품 남면 사평시장에서 구매
- 민원 : 출장소에서 처리하지 않은 민원은 남면, 동면, 화순, 능주 등 4개 읍면을 경유 한천면을 찾아가는 형편으로 경제적 손실이 큼.
- 사고처리 : 사건. 사고 발생시에도 남면 파출소에서 처리하는 사례가 많음.

○ 한천 영외지역 남면 편입 반대 진정

- 진정인 : 한천면 영외지역 남면 편입 반대 추진위원회 위원장
조규동 외 781명
- 이유
 - 경제생활의 불편 : 물질적 경제생활의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값진 것은 인간본연의 도덕성을 바탕으로한 전통적 윤리와 정서적 가치관이 보다 중요함.
 - 교통과 행정의 불편 : 그동안 둑재의 고개마루를 깎아내리고 길을 넓혀 일부구간을 제외한 전 도로가 포장되었고, 한천면 영외출장소와 한천농협 분소가 설치되어 있어 행정서비스 제공에 불편함이 없음.
 - 생활권 문제 : 어느 지역에서나 시도, 군, 면 경계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근접한 타시도, 군, 면의 시장이나 집거상점을 이용함이 상례임
 - 학교문제 : 행정구역에 구애점이 없이 일정한 거리를 기준으로 학구를 제정
 - 치안문제 : 발달된 통신망과 편리한 도로를 이용한 기동력으로 문제 발생시 신속 대응할 수 있음
- 결론

영외지역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하다고는 하나 육체적, 경제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정서라 할 수 있고, 만에하나 영외지역이 남면으로 통합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영세성과 낙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한천면은 폐면이 안된다고 보장할 수 없으므로 한천영외지역의 남면 편입을 절대 반대함.

□ 제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관한사항

- 회기 결정의 건
-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
-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
- '95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
- 건설공사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

제 47 회 임 시 회 의 사 일 정 (안)

회기 : '96. 9. 16 ~ 9. 21 (6일간)

일 정	부 의 안 건	비 고
9. 16 (월) 10:00	개 회 식 1. 회기 결정의 건 2.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.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. '95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. 건설공사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	
9. 17 (화) ~ 9. 18 (수)	휴 회	상임위원회 활동
9. 19 (목) 10:00 ~ 9. 20 (금) 10:00	군 정 질 문	
9. 21 (토) 10:00	1. 화순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 2. 화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3.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4. 화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 5. 화순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	총무위원회 " " " "

일정	부의안건	비고
	<p>6. 화순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</p> <p>7. 화순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</p> <p>8. 화순군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(개정조례안)</p> <p>9. '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</p> <p>10. 광주도시지하철 화순까지 연장 촉구 결의문</p> <p>11. 의료보험통합 촉구 결의문</p> <p>12. 식용쌀 수입반대 촉구 결의문</p>	<p>산업·건설위원회</p> <p>"</p> <p>"</p> <p>총무위원회</p>